



고용노동부

#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」에 따른 준수지침 안내

---

### 1. 관련

- 가. 「서울·인천·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」 2단계 격상 관련 준수지침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3083, '20. 8. 19.)
  - 나. 「전국 사회적 거리두기」 2단계 격상 관련 준수지침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3139, '20. 8. 22.)
  - 다. 「수도권 방역조치 강화」 조치 관련 준수지침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3249, '20. 8. 28.)
  - 라. 「수도권 방역조치 강화」 연장에 따른 추가지침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3332, '20. 9. 4.)
  - 마. 「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」 조정에 따른 준수지침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3424, '20. 9. 13.)
2. 2020. 10. 11.(일) 정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「전국 사회적 거리두기」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(10.12~)하면서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, 한국산업인력공단은 「전국 사회적 거리두기」 1단계 조치사항에 대해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 등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□ 수도권 훈련기관

-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(16종)에 **직업훈련기관도 포함됨**에 따라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이용자 간 거리두기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  - 위반\*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**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훈련생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**
  - \* 감염병 제49조제1항제2호의2 위반: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  - 다만, **과태료 부과**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.13부터 적용
  - 한편, **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, 해당 시설이 집합 금지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철저**

